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4. 9.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1. 3.)되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공항과 연계된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방향 마련 필요

- 부울경 국제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주변 일원 개발방향 정립이 필요한 바,
- 부울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로 다음 100년의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사업), 물류인프라 등을 연계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가덕도 주변 해역 매립 필요성

-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는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2023.3.)’상 부산도시공간 10개 중심지(10-Core) 중 신공항중심지 핵심사업지역으로 해양성장축과 신공항연계축이 교차하는 중심거점 공간으로 설정되어, 신공항·항만·철도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조성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부산시 중점 추진사업임.
- 신공항 이용객, 관광객, 주변지역 종사자 및 지역주민, 주변 산업여건 등의 다양한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기능, Tri-Port 확장기능, 국제업무핵심기능, 편의증진 기능 등을 집약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이주단지와 물류단지 등을 위한 대규모 개발가용지가 필요하나,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눌차지구는 신공항과 신항만을 동시에 지원하고 연계 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적정 개발 가용지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가덕도내 기존 생태축인 강금봉~매봉~연대봉은 보전하고 부족한 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눌차만과 녹산국가산업단지 전면부 해역 매립은 불가피한 실정임.

1.2 계획의 추진경위

가. 관련 계획

- 2008. 06. : 눌차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2008. 07.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25호, 매립면적 1,245,000㎡)
- 2021. 03. 16.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9/17 시행)
- 2022. 04. 18. :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21.05.21. ~ '22.04.18.)
- 2022. 04. 26. :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국무회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2023. 03. :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 공항배치 변경: 해상 배치 → 육상·해상 배치
- 2023. 08.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023. 12. 27.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9호)
- 2023. 12. 29.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0호)

나. 본 계획

- 2022. 12. :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검토('21.11. ~ '22.12.)
- 2023. 05. :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 12. : 주민설명회(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 *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추진상황, 토지이용계획(안)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 2024. 08. : 주민설명회(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 *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추진상황, 토지이용계획(안)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 2024.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제출
- 2024. 08. 2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개최
~ 09. 10.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됨.

<표 1.3-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파. 특정지역의 개발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4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다. 계획 수립기관 : 부산광역시

라.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마. 협의기관 : 환경부

바. 계획내용

1)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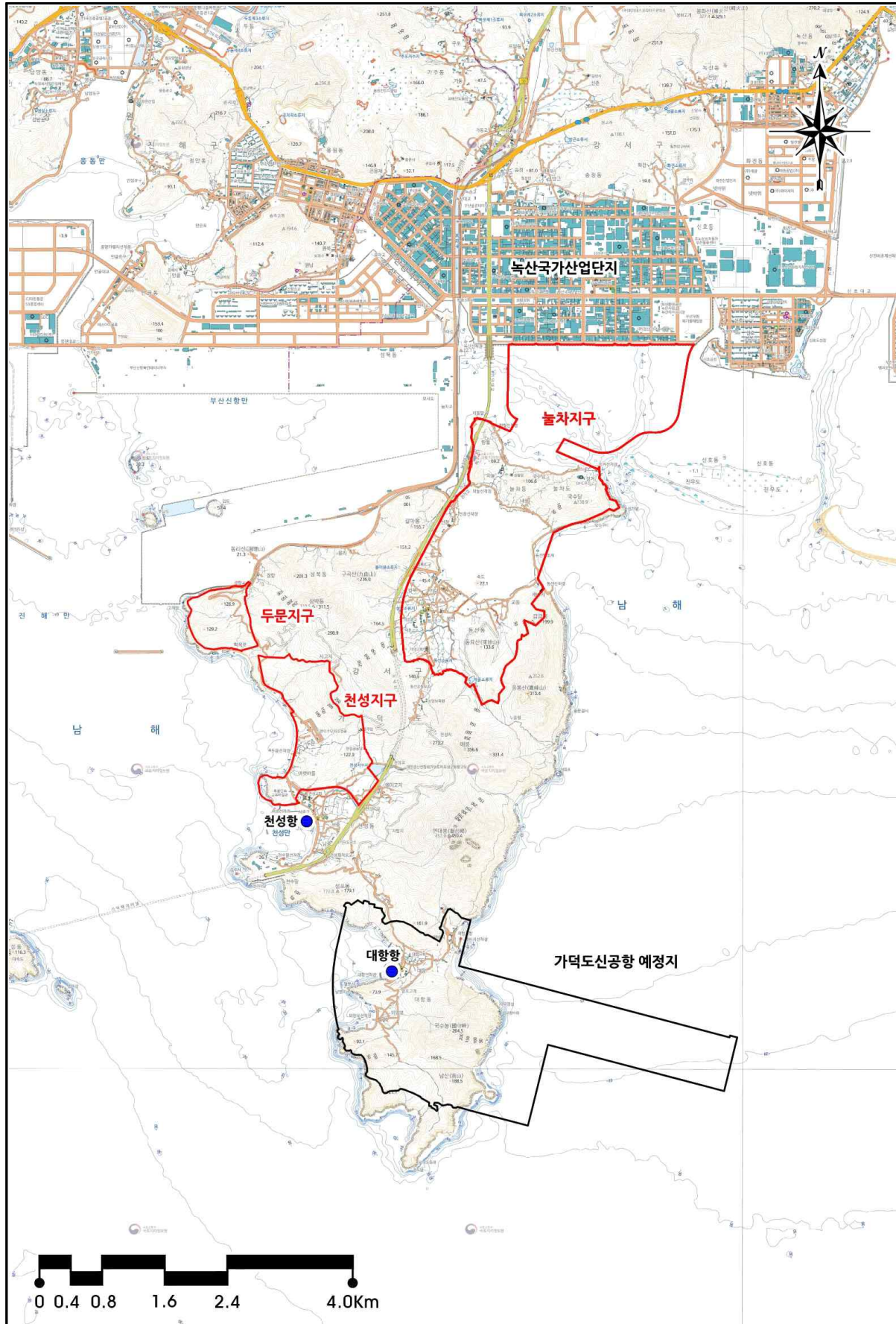
눌차지구	두문지구	천성지구	합 계
7,697,521m ²	558,480m ²	1,629,509m ²	9,885,510m ²

2) 공유수면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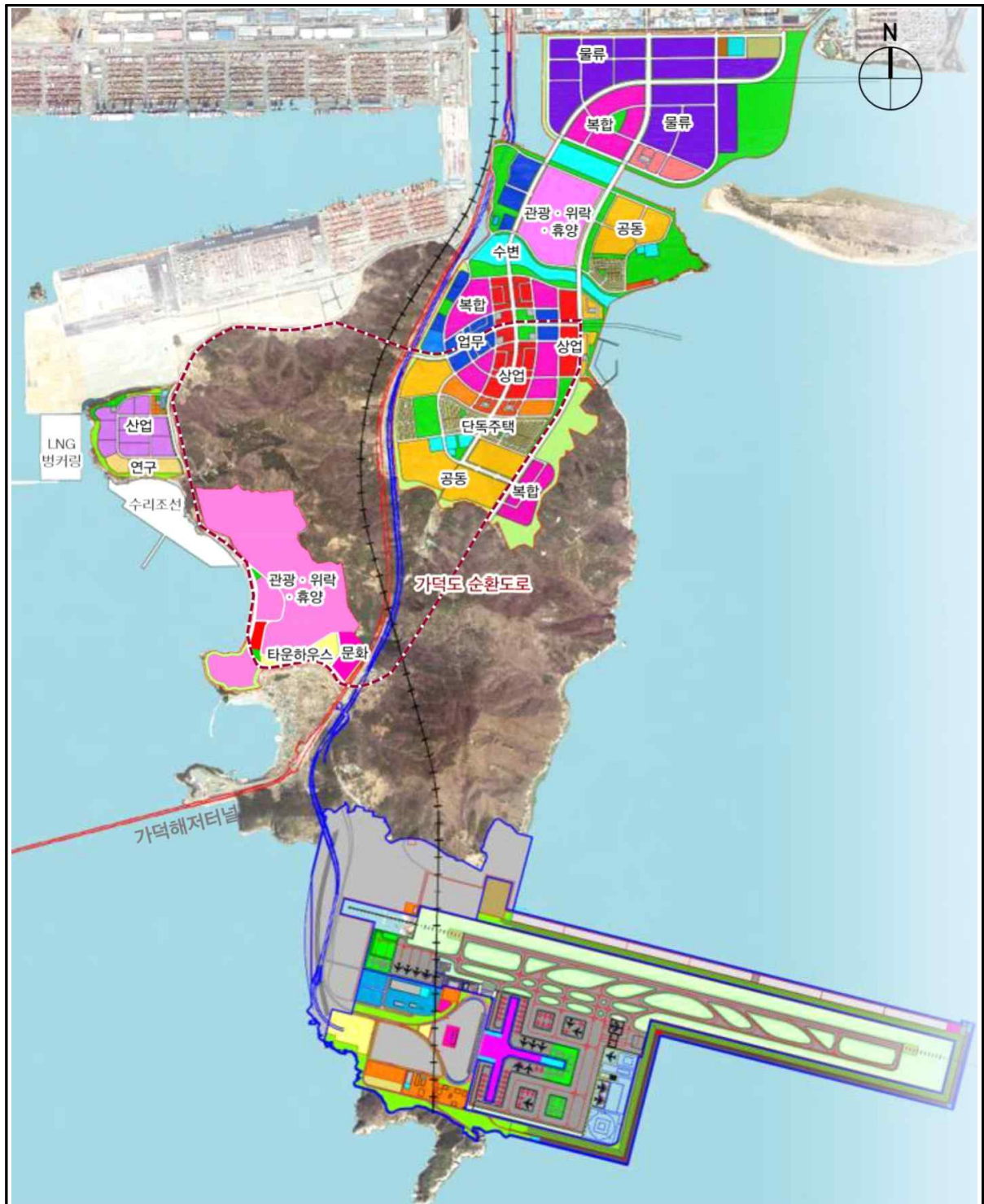
○ 매립면적 : 4,504,426m²

○ 매립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눌차동, 성북동 일원

○ 매립지 용도 : 물류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복합용지 등



<그림 1.4-1> 위치도



<그림 1.4-2> 토지이용구상안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 심의기간 : 2024. 08. 22. ~ 09. 10.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9명(부산광역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강서구, 관계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표 2.1-1>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 조항 발췌)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⑥ 생략



부 산 광 역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개최 알림

1. 신공항도시기과- 6084(2023.9.26.)호, 신공항도시기과- 6085(2023.9.26.)호 관련입니다.
2. 우리 市에서 추진 중인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3.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동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함을 알려드립니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개최를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심의의견을 **2024년 9월 4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개요 》

- 가. 심의방법 : 서면심의(공문 또는 전자메일로 의견 수령)
나. 심의위원 : 불임 참조(위촉장 생략, 공문 발송)
다. 심의기간 : 2024. 8. 22. ~ 9. 4.(14일간)
라. 심의내용 : 전략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현황 1부.
2.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별송).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양식)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수신자 환경정책과장, 환경부장관(환경영향평가과장), 노동경제정책위원회(노동경제정책과장), 한국환경연구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부산연구원장, 부산광역시강서구청(강서구청장), 강서구 주민대표 귀하,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주무관 [redacted] 신공항도시기과 전결 2024. 8. 21.
협조자 [redacted]
시행 신공항도시기과-5268 (2024. 8. 21.) 접수
우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연산동) / <http://www.busan.go.kr>
전화번호 051-888-4121 팩스번호 051-888-4109 / [redacted]@korea.kr / 비공개(5)
함께 만드는 민원문화, 공감과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계획명 :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 총 관 ○ 동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입지계획과 연계하여 주택용지, 산업·물류시설용지, 산업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천연기념물(철새도래지),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매립 등으로 직접 훼손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가덕도 신공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관련 근거자료 제시)로 개발계획 규모를 조정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지 대안 검토제시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 사업 예정지는 천연기념물인 낙동강 하류 칠새 도래지를 포함하고 있는바, 조류 서식 환경 영향에 대하여 가덕도 신공항 계획과의 누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계획지구 경계로부터 최소 5km 이상)하여야 함 ○ 대규모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바, 대기질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4km 이상으로,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은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상 확대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논차지구 > ○ 낙산국가산단 남측 해양을 매립하여 대규모 물류시설 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동 지역은 천연기념물(낙동강 하류 칠새 도래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바, 문화유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입지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해양 매립 대상지 전체가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는바, 관련 법령(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양생태적 보전 가치를 고려하여 매립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두문지구> ○ 계획지역 전체가 해양과 직접한 산림지역에 해당되는바, 해양환경, 산림생태계, 지형·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발규모를 최소화(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이상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외, 해안선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및 완충지역 설정 등)하는 토지이용 구상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천성지구> ○ 약 127만제곱미터 규모의 관광시설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동 용지에 입지할 시설계획(골프장, 리조트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어려운바, 입지 가능한 시설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토지이용 구상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대 안 ○ 가덕도 신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 규모(관련 근거자료 제시)로 개발계획 규모를 조정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지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구상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근거자료 등 제시 ※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참조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 계획지구는 가덕도 신공항 운영시 항공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음환경 측면에서 주거용지 등 정온성이 필요한 용지에 대한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동 계획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는 육상 동·식물상 2회, 해양 동·식물상 1회, 해양환경 1회, 대기질, 소음·진동 1회 등 최소한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계획의 규모,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현지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육상 동·식물상은 문헌조사 결과 출현이 가능한 범정 보호종에 대하여 출현 시기를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 실시 - 특히, 조류의 경우 칠새도래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누적 평가(가덕도 신공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횡수의 현지조사 실시 ○ 논차지구의 경우, 대규모 갯벌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특히 논차지구 동측의 사주섬은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로 해양매립시 침식, 퇴적 등 해양유리 영향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동 계획은 대규모 지형훼손 및 매립계획을 수반하고 있는바, 도취장 개발, 매립제 확보·이동 등에 따른 주변 경온시설 영향(주요 이동로 포함)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동 계획지구는 기존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바, 기존 주거시설 등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과 함께 지장을 철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환경영향 및 적정한 저감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5. 기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나, 동 사업 규모, 입지 특성, 주민수용성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지역까지 주민의견 수렴 대상지역 범위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권고함 ○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함께 비치·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 대안별로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초안 요약서 작성 - 가능한 다양한 방법(인터넷, 소셜미디어,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의견수렴을 실시 하고,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고 ○ 동 계획은 대규모 주거 및 산업시설 용지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024. 9. 3. 협의회 위원 :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계획명 :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 총 관 본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사업), 물류인프라 등을 연계한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기본계획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진반에 있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낙동강하류 칠새도래지와 인접한 해안선을 따라 완충 녹지공간을 확대 확보하는 등 본 사업으로 인한 칠새서식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천성지구 인근에 예정된 수리조선단지와 관련하여 관광·위락·휴양시설에 대한 환경영향(먼지, 소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향후 가덕도 신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논차지구내 공동주택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3. 대 안 ○ 별도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포유류 및 해양야생물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본 사업의 환경현황 조사가 추가 검토 5. 기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의 생략)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견 수렴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고명에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의견수렴 절차가 병행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 2024. 9. 9. 협의회 위원 :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계획명 :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 총 관 ○ 동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및 해양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바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을 포유류·조류 항목에 대해서는 1.0km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 신호산단-명지주거단지-신자도-진우도 교차 해역의 수질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선택이 필요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관련 안내서에서 규정(p.73)한 0.1-0.5km의 범위 이상을 설정하여 이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낙산산단 남측해역(가덕수로 유출부) 토지이용으로 인한 신호산단-명지주거단지-신자도-진우도 교차 해역의 해수 교환 저하와 상기 해역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바 상기 해역의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 구상안 마련 필요 - 진해만의 해수(고염분)가 가덕수로를 통해 신호산단-명지주거단지-신자도-진우도 교차 해역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도가 높은 서낙동강의 유출수를 희석·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토지이용 구상안으로서는 서낙동강 유출수의 희석·확산이 저해되어 해당 해역의 수질악화가 우려됨 3. 대 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신호산단-명지주거단지-신자도-진우도 교차 해역의 수질악화가 우려되기에 낙산산단 남측해역의 매립이 없는 p.80의 대안2 또는 대안3으로 추진되었으면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p.25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을 0.1-1.0km로 언급하고 p.91에서 육상 동·식물상의 조사지점을 0.1-0.3km로 나타낸 바, 포유류, 조류에 있어서는 1.0km로 대상지역 확대가 필요함 5. 기타 (환경보전목록, 의견수렴 계획,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의견) ○ 의견수렴 계획에 대한 이견은 없음 2024. 9. 4. 협의회 위원 : [인]

<그림 2.1-2> 심의의견서(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 및 저감방안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평가분야별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량적인 설정이 어렵거나 필요성이 적은 항목은 정성적으로 설정·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서 제시된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중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생태면적률, 오염총량 기준 등 법률 등에서 설정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계획수립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 사업지역 주변에서 계획 또는 공사·운영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영향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은 누적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사업구역 경계설정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시

- 1 -

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해당 계획별로 사업개요, 관리계획(안), 변경사유,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현황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포함) 등을 제시

3. 토지이용 구상안

-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증점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주변의 습지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4. 대안

-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각 대안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고 제시해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현지조사는 대상지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포함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주요 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와 인접하므로 해당지역이 철새의 이동경로 혹은 서식지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미칠 영향 예측 및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2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2024. 9.

심의위원

- 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계획명 :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 총괄

- 각종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사업대상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대책 수립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동식물상, 해양은 평가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두문지구와 천성지구가 거의 인접하고 있으나 개발방향이 상호 이질적이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영향을 검토하고 주변 어업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함
- 대규모 사업이므로 주거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5. 기타 (환경보전목표, 의견수렴 계획,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의견)

-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 ① 농차지구 상업용지(물류시설)와 주거용지 사이, ② 농차지구와 전우도 일원의 문화재보호구역 사이, ③ 두문지구와 천성지구 사이 등에 실질적인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완충녹지 등을 강화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 개발로 인하여 가덕도동 원주민에게 개발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주대책·생계대책 등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2024. 9. 4.

협의회 위원 :

<그림 2.1-2> 심의의견서(3/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계획명 :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 총 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자체를 무시하고 설정한 계획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대안 1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본 대안의 선정은 경제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임. 환경적 측면에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인데, 환경적으로 최악의 대안이 입지적 관점에서 판단된다는 것은 계획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임. 아울러,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비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본 대안이 칠새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는데, 칠새 및 자연환경에 대한 정밀조사 없이 대안을 선정한다는 것은 아무런 검토 없이 선정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님.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개의 지역 중 특히 농촌지구는 산지경계 농경지(현재 택지전환중)과 간석지 그리고 동선방조제를 경계로 한 열린바다가 있어 다양한 생태계가 어울려 있는 곳임.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농촌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동시에 해역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임. 농작 국수봉 주요 능선과 동남사면은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임. 나아가 부산신항과 신호공단의 입지로 인해 다시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신호 갯벌은 여전히 낙동강 하구역의 주요한 칠새도래지임. 한편 농작만 일원의 지명에서 읽을 수 있듯 선량, 성북 그리고 농작채성 등의 역사문화적 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그 가치와 보전에 따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결론적으로 본다면 대상지 선정 자체가 잘못 설정됨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수정의견()

○ 매립과 철도를 전제로 지역의 생태경관과 원형상실을 강제함. 물류용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가 전무하며 기존 그리고 계획중인 강서구 일원의 물류계획과의 연계성없이 공영수면의 매립을 통한 토지 확보로 밖에 보이지 않음.

3. 대 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최적 대안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연안생태계 정밀조사, 육상 동식물상 4회, 해양동식물상 4회, 칠새 4개월 조사 및 기존 야생조류 조사결과 분석, 해수면 흐름 차단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 시뮬레이션, 낙동강하구 보호지역의 영향 시뮬레이션 등

5. 기타 (환경보전목표, 의견수렴 계획,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의견)

○ 의견수렴에 있어 必 평가서 사전 공유 및 전문가 및 지역시민환경단체 의견수렴

2024. 9 . 9

협의회 위원 :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계획명 : 가덕도 신공항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 총 관

○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가덕도 주변해역의 ① 매립 필요성 및 매립면적(4,504.426㎡)의 적정성, ② 입지 타당성, ③ 환경보전 목표 설정, ④ 대안의 설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됨.

○ 특히, 농촌지구(약 770만㎡)의 경우 매립면적이 과도하고, 환경보전조치와 대안설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설정도 좁게 설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수정의견()

○ 농촌지구의 개발방향, 개발면적, 공간구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성이 떨어져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음.

○ 신공항 건설로 인한 이주대상 가구수 등을 고려할 때 공영수면 매립면적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폭 축소하는 재조정이 요구됨.

○ 가능한 육상지역을 활용한 토지이용 구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영수면'로서 매립 이후에는 사라지는 공영수면에 대한 매립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3. 대 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입지대안 검토 내용과 근거가 부족하며, 용지확보를 위한 수단 및 방법의 타당성 및 근거도 부족하므로 대폭 수정·보완이 필요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에 따라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지점 및 조사횟수도 해양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에 따른 영향을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대안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섣달 또는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5. 기타 (환경보전목표, 의견수렴 계획,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의견)

○ 부산연안특별관리지역의 환경조치, 국토환경성평가지도(1·2등급), 해양생태도(1·2등급), 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음

○ 의견수렴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함

2024. 9. 4.

협의회 위원 : (인)

<그림 2.1-2> 심의의견서(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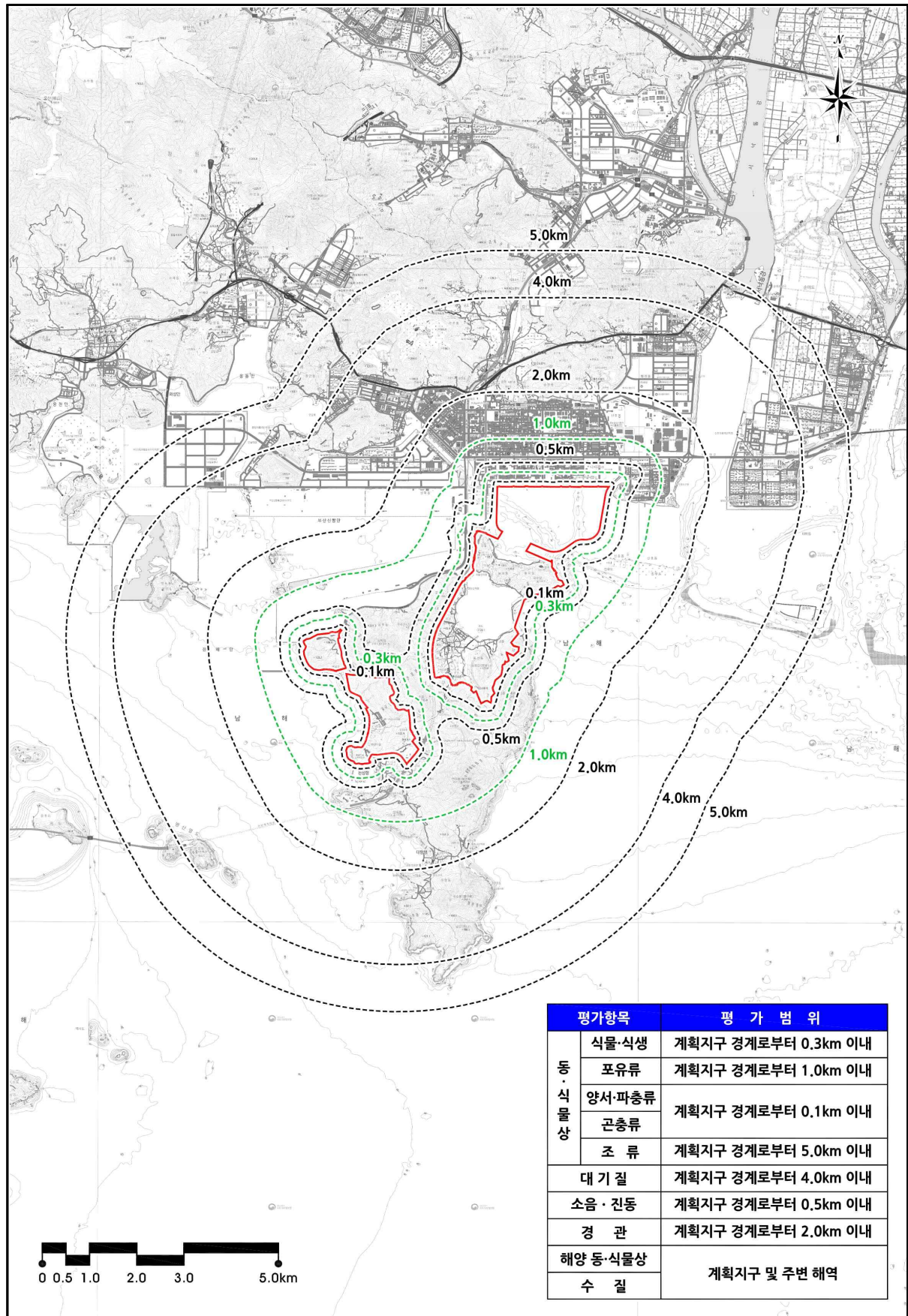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 환경부” 등 관련 자료의 평가범위 설정 기준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설정하였음.

<표 2.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식물상 : 0.3km 이내 ○ 포유류 : 1.0km 이내 ○ 조 류 : 5.0km 이내 ○ 양서·파충류, 곤충류 : 0.1km 이내 ○ 해양 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주변 해역	○ 계획 시행으로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지구	○ 계획 시행(부지조성, 매립 등)으로 지형변화가 예상 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2.0km 이내 조망점	○ 계획 시행으로 경관변화의 영향검토 범위
	수환경의 보전 (해양환경)		계획지구 및 주변 해역	○ 계획 시행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발생 (공사시 토사 유출 및 운영시 오수 등)과 관련한 주변 해역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과의 부합성	대기질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4.0km 이내	○ 계획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
		소음·진동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 계획 시행에 따른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
		토 양	계획지구	○ 토양오염원 및 토양오염물질의 발생과 관련한 계획지구 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관련 행정구역	○ 계획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와 관련한 행정구역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지구	○ 계획 시행으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계획지구	○ 계획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변화가 예상되는 계획지구 내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 계획 시행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지구 내
	인구·주거·산업		계획지구	○ 계획시행과 관련하여 인구·주거·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는 범위



<그림 2.2.1-1>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2 현황조사

○ 현황조사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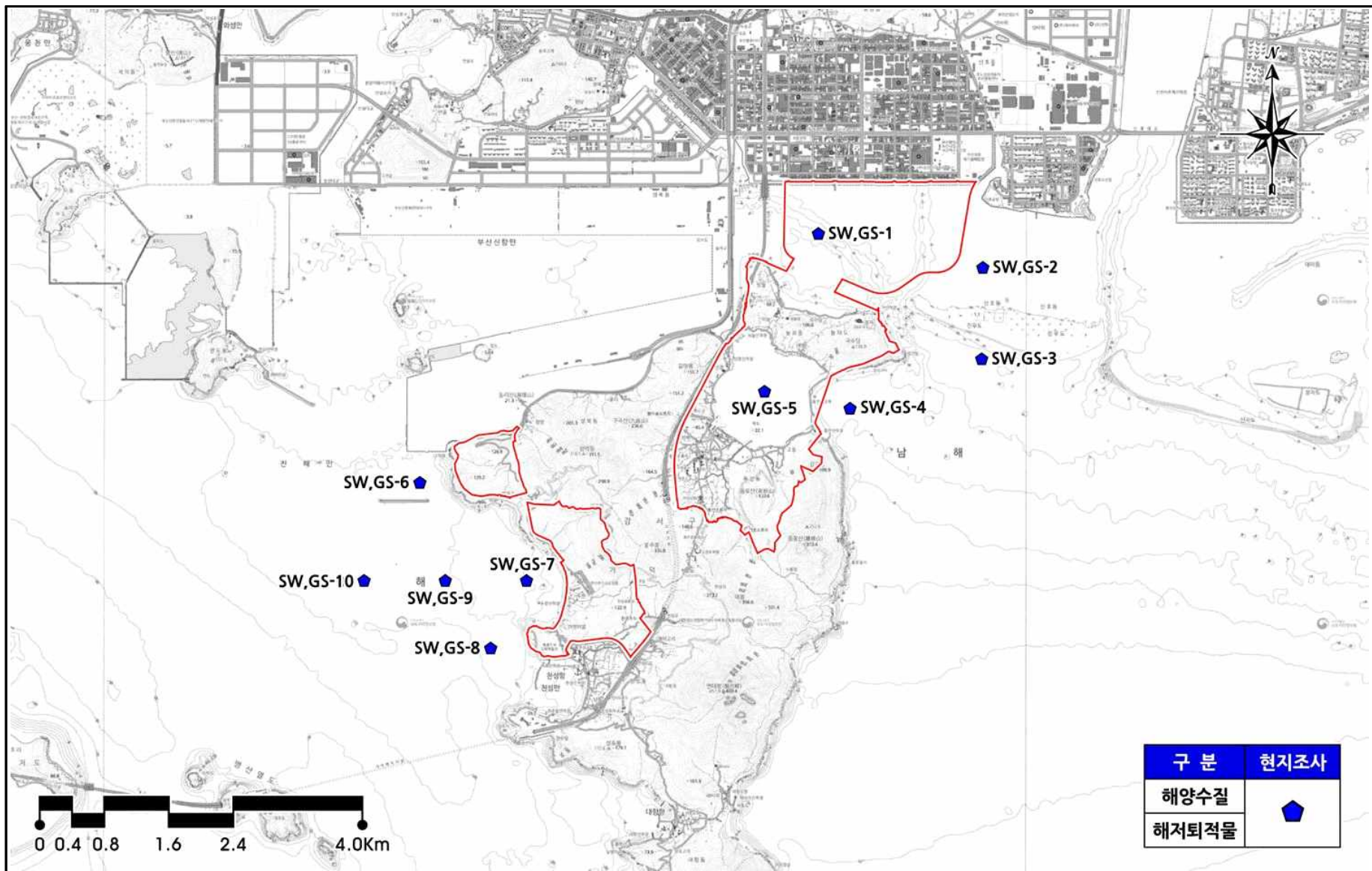
※ 현황조사는 현지조사와 자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본 평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등을 참고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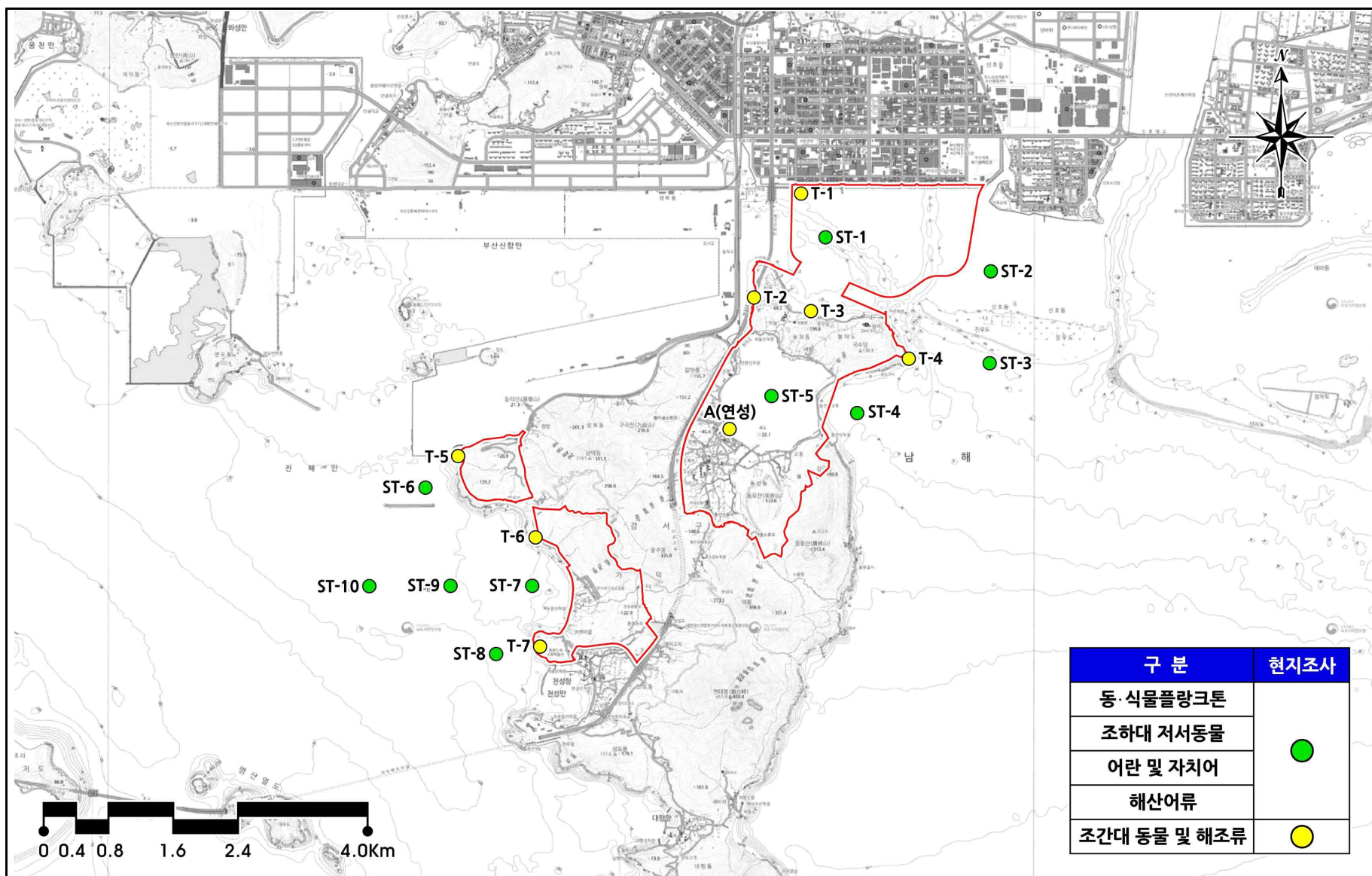
<표 2.2.2-1> 현황조사(현지조사) 계획

구 분		조 사 내 용	조사지점	조사횟수
육상 동·식물상		○ 육상 식물상 및 식생 - 현존식생 및 식생보전등급, 법정보호종, 노거수 및 보호수, 생태계교란 식물 등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3km 이내	2회
		○ 육상동물상 - 포유류 - 조류 -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1.0km 이내 0.1km 이내	
해양 동·식물상		○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10지점	2회
		○ 조간대 동물 및 해조류	8지점	
해양 환경	해양 수질	○ 해양환경기준 27개 항목 - 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Chl-a, 투명도, DIN, DIP, Cu, Pb, Zn, As, Cd, Cr ⁶⁺ , Ni, CN, Hg,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놀, ABS,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 해역이용협약서 작성 규정 8개 항목 - 수온, 염분, COD, TOC, DO, SS, T-P, T-N	10지점	2회
	해저 퇴적물	○ 해양환경기준 9개 항목 - As, Cd, Cr, Cu, Zn, Pb, Hg, Ni, Li ○ 해역이용협약서 작성 규정 6개 항목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10지점	2회
대기질		○ 환경기준 8개 항목 -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4지점	2회
소음·진동		○ 주·야간 소음도 및 진동레벨	4지점	2회
토 양		○ 토양오염우려기준중 21개 항목 -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CN, PCB,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4지점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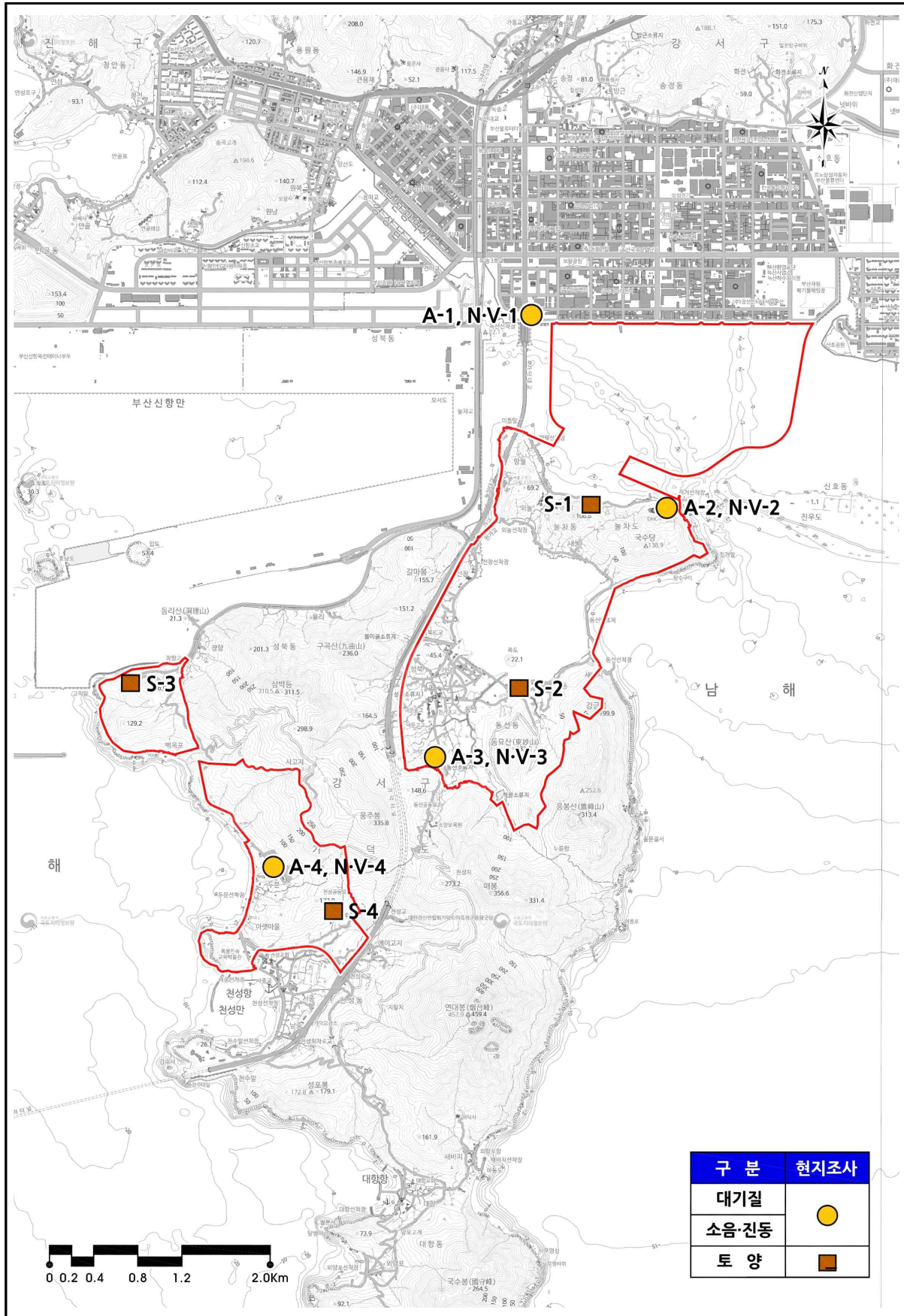
주) 조류 : 현지조사 1.0km, 자료조사 5.0km 범위를 조사할 계획임(계획지구 경계 기준)



<그림 2.2.2-1> 현황조사 지점도(해양수질, 해저 퇴적물)



<그림 2.2.2-2> 현황조사 지점도(해양 동·식물상)



<그림 2.2.2-3> 환경현황 조사지점도(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2.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2.3.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공개시기 및 기간
 -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이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
- 공개방법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EIASS)에 게시
- 의견제출 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공개된 평가항목 등에 대해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2.3.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가.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협의기관(환경부), 승인기관(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지방환경관서(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광역시·도, 관할 시·군·구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

나. 주민 의견수렴

1) 평가서 초안 공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공고내용 : 계획개요, 공람기간 및 장소,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
- 공고방법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관할 시·군·구 또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망에 공람 내용, 평가서 초안 요약문 게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공람 내용, 평가서 초안 게시
- 공람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의견 제출
- 공람장소(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에 평가서 초안 및 ‘주민의견 제출서’ 비치

2) 설명회 개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설명회는 초안 공람기간 중 실시(일시,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설명회 개최공고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공람공고와 함께 공고

다.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시기 및 기간 :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14일 이상 게시
- 공개방법
 -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게시